이용료, 그 밖의 입소자의 비용 부담관계

동원의료기 노인복지용구

이용료, 그 밖의 입소자의 비용 부담관계

1. 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자

계약은 이용자(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함.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한다.
- 이용자(수급자)가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됨.

3. 복지용구 급여

1) 복지용구 급여의 정의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이용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2) 복지용구 급여방식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해당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 구입방식 : 『구입품목 9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4. 급여 이용절차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 복지용구 사업소간 방문 또는 유선상담, 복지용구 사업소의 필요 구비 서류 확인 및 급여가능 여부 전산 조회, 욕구사정, 상호간 복지용구 이용계약체결 및 제공,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및 본인부담금 수납, 사후관리, 급여종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5. 급여의 계약기간과 계약목적

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복지용구 급여서비스의 이용 계약기간은 '시작일은 계약일,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종료일' 또는 '희망 종료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나 특별한 사유 등으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급여 이용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3) 복지용구 급여서비스의 계약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복지용구의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유지, 관리를 위함에 있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산정방법

1)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복지용구 급여비용 중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2)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3)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용, 설치비, 철거비용, 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비용,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이용자(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이용자(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전동침대 등의 일부품목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5) 이용자(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7.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이용자(수급자)별로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그 욕구를 사정하고 급여계획을 수립 및 반영한다.
1) 복지용구사업소가 이용자(수급자)의 욕구반영 및 본인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복지용구급여를 계약 체결한다.
2) 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대여 장비에 한하여 복지용구 사업소는 급여개시 전에 적정한 요양급여 제공을 위해 개별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사정(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별적 욕구)을 하고 이에 관한 총평 등을 기록한다.

8. 급여계약 체결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 급여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복지용구 급여이용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반드시 1통은 이용자(수급자)에게 제공한다.
1. 이용자(수급자)와 보호자는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대상별 항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해당자, 필요 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해당자, 필요 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해당자)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이용자(수급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복지용구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과 더불어 희망하는 급여내용을 복지용구사업소명 등을 기재

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입소이용 의뢰서를 신청하거나 사업소에서 대신하여 신청해야 한다.

9.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수급자)와 신원인수인(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는,

① 보호자는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 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 이용자(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 이용자(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수급자)와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① 정보 제공의 의무- 보호자 및 이용자(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② 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 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 이용자(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 이용자(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10.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이용자(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 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 일부터 적용한다.

3) 본 기관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6%, 9%
- 감경 대상자:
 ⑴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⑵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 상위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 복지용구 연 이용한도(원)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이 부담
	경감 수급자	91%	9%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이 부담
	의료 수급자 경감 수급자	94%	6%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6%는 본인이 부담
	기초 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2) 공단부담금

① 서비스 이용자(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게 됨

4.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이용자(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2024년 기준)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11. 계약의 해제

계약의 유지 및 계약의 만료,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수급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이용자(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4)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5)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 단, 병원입원 시 수동 휠체어, 욕창예방 매트리스는 계속 사용 가능)

6) 구입품목의 급여이용 계약 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능함을 원칙으

로 한다.
7)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1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본 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 이용료 비용의 변경
㉮ 서비스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에 의해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비용을 지불한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반, 감경, 기초수급자 등의 자격 기준에 의한 법조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른다.
㉰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대상자의 질병 및 기능상태, 수발환경 변화 등의 사유 등으로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단 이때는 기관의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여 내용을 변경 적용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계약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해당요건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수급자)의 급여내용, 자격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수급자)의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자(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서비스 내용이 증감되었을 경우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변경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등
나. 변경 방법 및 절차
㉮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 수가 및 자격기준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13. 복지용구 급여종류

1)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급여품목에 대해서만 판매 및 대여를 하며 제품의 특징 및 사용설명에 대해 정보를 게시한다.
2) 기관에서 취급하는 급여의 종류로써 구입 및 대여품목은 아래와 같다.

○ 급여품목

품 목				내구연한
구입 품목	1	이동변기	화장실로 이동하기 여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5년
	2	목욕의자	목욕 시 자세 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5년
	3	성인용보행기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5년
	4	안전손잡이	손잡이를 부착하여 자립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없음
	5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양말, 매트)	없음
	6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 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없음
	7	지팡이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2년
	8	욕창 예방 방석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3년
	9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없음
	10	요실금팬티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없음
대여 품목	11	수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 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5년
	12	전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10년
	13	수동침대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10년
	14	이동욕조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5년
	15	목욕리프트	입욕 시 높낮이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3년
	16	배회감지기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등)	5년
구입 또는 대여 품목	17	욕창예방매트리스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3년
	18	경사로(실외용)	실내외에서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 보행기 이용 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8년
		경사로(실내용)		2년

○ 급여기준

1)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2) 연간한도액 적용구간 내 구입가능 개수

미끄럼방지양말	미끄럼방지매트	자세변환도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경사로(실내용)
6켤레	5개	5개	10개	2개	4개	6개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 가능

3)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4)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5)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6)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14. 급여제공방법(판매, 대여)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품목의 급여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일년 단위이고, 한도액은 연 160만원이며,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간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수가 기준에 의하여 개별 수급자의 등급별 월 이용 한도 내에서 실제로 급여 서비스한 금액의 해당 법정 본인부담률 (일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6%, 9%, 국민기초수급권자는 0%)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복지용구 사업소에 납부해야 한다.

3)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 내지 6개월 단위로 수급자 형편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5. 월 이용료 비용 산정을 위한 급여기준

복지용구 급여기준은 이용자(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복지용구 제품을 구입, 대여가 가능하다.

1) 이용자(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이용자(수급자)의 신체 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 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이용자(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없는 제품 중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 및 안전손잡이 등은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 관련법령에 의거 이용(사용) 개수가 제한될 수 있다.

3)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의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4)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간주한다.

5) 이용자(수급자)가 구입 한 제품이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 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이용자(수급자)가 신체상태의 변화 등으로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확인한 경우 품목을 다시 정할 수 있다.

7) 이용자(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입원 기간 중 특정 대여품목 및 특정 기간에 한해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8) 이용자(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

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9) 대여기간 중 이용자(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10) 이용자(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16. 대여제품에 대한 관리

1) 이용자(수급자)는 대여 받은 제품이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2) 대여제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대여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여제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시, 수급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상한다.(감가상각률은 내구연한 기간에 맞는 율로 계산한다)

17. 대여제품의 분실 및 파손 책임

1) 대여제품이 이용자(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대여 기간 중에 파손, 분실된 경우 사업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파손, 분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2) 제품의 자연적인 훼손일 경우 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한다.
3) 대여 기간 종료 또는 이용자(수급자)가 제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정상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제품을 반납하여야 한다.